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19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19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5나20265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3가합896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1. C

2. G

3. Q

피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전 상호 : 에스에이치공사)

판결 선고 2018. 9. 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5나20265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Q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C, G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C, G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 C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BO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4. 1. 15.부터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C이 BO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DJ아파트 331동 1002호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음으로써 BO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권리까지 양수하였다고 보아,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주대책대상자,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G 부분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같이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소송물을 양수한 자는 그가 전소의 소송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그가 제기한 후소는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나. (1) 우선 원고 G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과 BS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38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원고 G가 종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종전소송에 참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G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 G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BS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1/2지분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종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이나, 종전소송에서 BS이 원고 G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다시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 G가 종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BS으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수하였음에도 종전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G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BS으로부터 분양계약자로서의 권리 중 1/2지분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G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소송,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 Q 부분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 이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CB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4. 1. 15.부터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Q가 CB으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보아, 원고 Q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인 AJ 지구를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일은 2004. 1. 15.이다.
- ② CB은 1996. 7. 3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인 '서울 은평구 DK'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 소재 주택을 소유하던 중 2008. 2. 25. 피고와 'BQ아파트 126동 7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③ 그런데 CB은 위 분양계약의 체결일 이전인 2005. 12. 13. '고양시 덕양구 DL'로 전출하였고(갑 제27호증), 피고와의 위 분양계약 당시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DL에 있는 DM건물 301호'로 기재하였다(갑 제4호증의 18).
- ④ 원고 Q는 2009. 2. 16. CB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매수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B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 15.부터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8. 2. 25.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CB은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Q도 이러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CB이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 Q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익사업법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Q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C, G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 C, G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